소방산업진흥과 소방안전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수신자 (주)지에프에스 (대표 김태호, 김현식)
(경유) 성능인증 담당자
제목 성능인증 승인

1. 귀사의 성능인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2026.04.20.일자로 성능인증 신청한 소방전원공급장치(성능)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아래와 같이 성능인증을 승인합니다.

| 신청인 | 접수번호 | 품 명 | 형 식 | 성능인증 번호 | 비고 |
|---|---|---|---|---|---|
| (주)지에프에스 (대표 김태호, 김현식) | 제2600085호 (2026.04.20.) | 소방전원공급장치 (성능) | AC 220 V, DC 24 V, 정격부하 : 20 A | 전원26-2 | - |

3. 제2호의 승인내용 중 제품형상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의 이름·상호·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때에도 성능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1. 검사성적서 1부.
2. 성능인증서 1부.
3. 성능인증 신청서류 1부.
4. 견품(완성품 및 부품일체 별송) 끝.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 직원 | 차재민 | 팀장 | 정범섭 | 부장 | 안명신 | 기술사업이사 | 전결 06/17 代 최정환 |
|---|---|---|---|---|---|---|---|

협조자
시행 시험인증2부-6156 ( 2026.06.17 ) 접수 ( )
우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 http://www.kfi.or.kr
전화 031-289-2826 전송 (031)287-9061 / ckwoals01@kfi.or.kr / 공개
소방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국민안전 동반자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7.9.>

# 검 사 성 적 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26,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20260060



1. 신 청 인 ☑ 원 본 ☐ 재발급
   ○ 업체명 : (주)지에프에스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56 (용현동)
   ○ 접수번호 및 접수일 : 제2600085호, 2026. 04. 20.
2. 검사성적서의 용도 : 성능인증용
3. 검사대상 종별(품명) : 소방전원공급장치
4. 검사기간 : 2026. 04. 20. ~ 2026. 06. 17.
5. 검사방법 : 소방청고시 제2024-27호(2024. 6. 5.)
6. 검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7. 검사환경
   ○ 온도 : (22.4 ± 2.9) ℃, 상대습도 : (54 ± 4) % R.H.
8. 검사결과 : 합격
   ※ 첨부 : 세부 성능시험 결과(2 ~ 3 페이지 참조)

| 확 인 | 실 무 자 | 확 인 자 |
|---|---|---|
| | 성 명 : 차 재 민 (서명) | 성 명 : 안 명 신 (서명) |

위 성적서는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

2026년 06월 17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인)**

비고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 KS Q ISO/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3. 이 성적서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상기 전화번호 참조)에게 연락바랍니다.

[첨부]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26,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2026006701



# 성능시험 결과

| 업체명 | (주)지에프에스 | 성능인증번호 | 전원26-2 |
|---|---|---|---|
| 품 명 | 소방전원공급장치 | 형 식 | AC 220 V, DC 24 V, 정격부하 : 20 A |

| 시험항목 | | | 결과 | | | 비고 |
|---|---|---|---|---|---|---|
| 조 항 | 항 목 | 기 준 | 시료(개) | 검사결과 | 판 정 | |
| 제3조 | 구조 | 주전원 및 예비전원 상태표시 등 구조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4조 | 강판의 외함시험 | 강판 외함의 두께는 1.2 밀리미터 이상 이며, KS D 9502의 중성염수분무 시험에 의하여 5주기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을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5조 | 예비전원시험 | 예비전원은 상온충방전시험 등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 2 | 시험생략 | 합 격 | * |
| 제6조 | 기능시험 | 정격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 및 예비전원 용량, 자동전환장치 등 기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7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 전원공급장치의 출력단에서의 과도현상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 2 | 적 합 | 합 격 | |
| 제8조 |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1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2 | 적 합 | 합 격 | |
| 제9조 | 최대부하시험 | 최대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 및 예비전원의 용량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10조 | 주위온도시험 | -(10 ± 2) ℃ 및 (50 ± 2) ℃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11조 | 살수시험 | 방수형인 것은 34.5 kPa의 압력으로 (45 ± 2)° 각도에서 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1 | 해당없음 | — | |
| 제12조 | 충격전압시험 |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및 0.1 ㎲, 반복주기 100 ㎐ 로 15초간 가하는 경우 오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2 | 적 합 | 합 격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26,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2026006901



# 성능시험 결과

| 업체명 | (주)지에프에스 | 성능인증번호 | 전원26-2 |
|---|---|---|---|
| 품 명 | 소방전원공급장치 | 형 식 | AC 220 V, DC 24 V, 정격부하 : 20 A |

| 시험항목 | | | | 결과 | | | 비고 |
|---|---|---|---|---|---|---|---|
| 조 항 | 항 목 | | 기 준 | 시료(개) | 검사결과 | 판 정 | |
| 제13조 | 진동시험 | | 전원을 인가한 상태 및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14조 | 충격시험 | | 무게 0.54 kg의 강철구로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2 | 적 합 | 합 격 | |
| 제15조 | 습도시험 | | (40 ± 2) ℃, 상대습도 (93 ± 2) %의 조건에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16조 | 절연저항시험 |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등 규정된 부위의 절연저항은 기준에 적합 할 것 | 2 | 적 합 | 합 격 | |
| 제17조 | 절연내력시험 |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등 규정된 부위의 절연내력시험에 1 분간 견딜 것 | 2 | 적 합 | 합 격 | |
| 제18조 | 전자파적합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할 것 | 1 | 시험생략 | 합 격 | ** |
| 제19조 | 표시내구성 시험 | 표시침지 시험 | 맑은 물에 48 시간 동안 침지한 후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에 적합할 것 | 1 | 적 합 | 합 격 | |
| | | 표시내열 시험 | (80 ± 2) ℃의 공기중에 10 일 동안 방치한 후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에 적합할 것 | 1 | 적 합 | 합 격 | |
| 제20조 | 표시 | |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 1 | 적 합 | 합 격 | |

※ 기 타 1. "*" 표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
2. "**" 표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제출로 인한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

"끝"